

3-12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606	2,799,900	1,743
공무원 일·숙직비**	541	110,000	20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03	2,316,300	1,445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 해당 예산액은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관련 예산을 포함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분청 당직비 총액

<각 항목별 기준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당 1,445,000원(출산축하 포인트는 기준액 한도 제외)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60,000원, 숙직비 : 1인당 60,000원
- 이통장활동 보상금 : 1인당 400,000원 / 매월
- 반장활동 보상금 : 1인당 25,000원 / 연 2회